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7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김성환·김기표·위성곤

서미화 • 이소영 • 박해철

김원이 · 김용만 · 정진욱

서왕진 • 전용기 • 조 국

허 영·신영대·오세희

김한규 · 박희승 · 복기왕

이상식 · 임미애 · 송재봉

양부남 · 황정아 · 이광희

김영화 • 주철현 • 정일영

박정현 · 김 윤 · 김태년

한정애 · 김동아 · 최민희

김정호 · 문대림 · 김 현

이학영 • 박지혜 • 문금주

노종면 • 박용갑 • 정준호

이병진 • 김영배 • 차지호

백승아 · 이용선 의원

(4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 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특히 기후위기가 현실의 재난으로 도래하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구하게 된 오늘날에는 계획수립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어, 기본계획에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제25조제2항).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이를"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을 포함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	
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u>이를</u> 확정한다. 다	<u>국회 소관 상임위</u>
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	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	
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	
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⑤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	동의를 구하는 경우, 제3조제2

포함되어야 한다.

⑥ ~ ⑨ (생 략)

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을 포함 <u>하여</u>----.. <후단 삭제>

⑥ ~ ⑨ (현행과 같음)